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료제출 요구출입·조사 거부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의 과태료 전환〉

■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716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자료제출 요구·출입·조사 거부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의 과태료 전환	2
2. 부칙	10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호선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해양이용·개발사업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해양이용·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 5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삭제 등).

Ⅲ. 검토의견

1. 자료제출·출입·조사 거부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의 과태료 전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①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해양이용·개발사업자,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자 및 ②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해양이용·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제2호·제3호 삭제, 제54조제3항제1호의2·제3호의2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2조(벌칙) ① · ② (생략)	제52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1조 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삭제>

<u>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 거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u> 3. 제29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u>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u> 4. ~ 6. (생략) 제54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 3. (생략) <u><신설></u> 4. ~ 7. (생략) ④ · ⑤ (생략)	<u><삭제></u> 4. ~ 6. (현행과 같음) 제54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 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 하거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29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 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4. ~ 7.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협의대상사업에 대한 협의의견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해양이용·개발사업자 및 해양이용평가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제28조제3항1) 및 제41조제4항2), 사업자가 실시하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해양이용·개발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9조제5항3)).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 제28조(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등)** ① 처분기관의 장은 면허등을 받은 사업자가 협의의견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처분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지연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전문가 또는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처분기관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의의견 이행을 확인할 때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제41조(대행업무 실적의 보고 등)** ① 평가대행자는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 실적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무 계약 체결 등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행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평가대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제29조(해양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면허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해양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적은 해양환경영향조사서를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

이러한 자료제출·출입·조사 요구에 대한 협조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써, 현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4)

□ 자료제출·출입·조사 거부 등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2025년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하여 보고·검사 위반 등 18개 유형의 경미한 의무위반⁵⁾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선과제를 추진한 바 있음.

□ 개정안은 자료제출·출입·조사 거부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임.

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사실을 처분기관의 장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자에게 공법 변경, 사업규모 축소 등 조치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2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9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5) 통지·표시·조사·검사 등 「법령집안심사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18가지([참고 1] 참조)

개정안을 통하여 경미한 위반행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과 동일한 벌칙을 규정한 현행법 제52조제3항⁶⁾의 다른 의무위반을 살펴보면, 해양이용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제1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 등록증을 무단으로 대여(제4호) 또는 대행(제5호)하게 하는 등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이법의 핵심 목적⁷⁾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실체적 위반행위인 반면,

개정안의 과태료 전환 대상 의무위반 행위인 자료제출·출입·조사 거부 등(안 제52조제3항제2호·제3호)은 행정청의 관리·감독 절차에 대한 비협조로서 환경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기보다는 행정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는 단순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점에서 같

6)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52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또는 재협의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
2. 제2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1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29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
4. 제35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평가대행자
5. 제35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자신의 대행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한 평가대행자
6. 제4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7)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은 조 각 호의 다른 위반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에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최근 5년간 개정 대상 규정의 벌칙 적용 건수가 0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과태료로 전환하더라도 제재의 억지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행정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⁸⁾

다만, 벌칙의 존재로 인해 법 위반이 제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태료 전환 후 제재 완화의 효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헌법재판소(2018.8.30., 2017헌바368)는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어떻

8)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전히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 부과만으로도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이 결정의 반대의견은 “행정질서벌만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형벌을 도입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2026)」에서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 또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감독을 받는 사업장,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등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⁹⁾

- 한편, 개정안은 종전 벌칙과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 입법례에 비하여 다소 높은 금액이나, 적용대상인 해양이용·개발사업자나 해양이용평가대행업자가 주로 해양이용 협의의 대상이 되는 개발을 추진하거나¹⁰⁾ 일정 기준 이상의 기술 및 시설·장비 요건¹¹⁾을 충족한 기업이라

9)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6)」, p.605.

는 점을 감안하여 상한액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됨.¹²⁾

<유사입법례¹³⁾ 과태료 상한액>

법률	과태료 상한액
「동물보호법」	-보고·자료제출 거부: 100만원
「선원법」	-보고 및 서류 제출 거부: 200만원 -출입·검사 거부: 2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출입·검사 거부: 3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출입·검사 거부: 300만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입·검사 거부: 1천만원
「전기통신사업법」	-검사 거부: 1천만원

-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을 제시함.

10)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해양이용협의의 대상) ① 처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등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개발사업(이하 “협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 또는 승인
6.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 및 양식업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1) 제33조(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2)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2026)」에 따르면, 법률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정할 때에는 동일 유형의 과태료 상한액 입법례, 위반행위의 내용(보호가치 등), 위반의 양태(부정한 방법 사용 여부 등), 해당 분야의 특성(영업의 종류 및 규모 등), 행위주체(대기업 등), 그 밖의 정책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상한액을 정하여야 하며, ‘보고’ 또는 ‘조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최빈값은 500만원으로 나타난 바 있음.(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6)」, p.607.)

13) [참고 2] 참조

2.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제도의 제도 및 안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¹⁴⁾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¹⁵⁾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¹⁶⁾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¹⁷⁾

14)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6)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895-896

17)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1

「법령입안심사기준」 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구분	세부 내용
1	인허가 등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에 관한 의무 위반행위(미허가, 미승인 행위 등은 제외)
2	신고 특정 영업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3	보고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
4	행정상 명령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의무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 중 경미한 행위
5	조사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감독을 받는 사업장,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등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6	계획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 대책, 규정, 기준 등을 수립·작성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립한 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7	유사 명칭 법률상 특정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에도 해당 자격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구성된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가 사용하는 행위
8	교육 법률상 일정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불이행하거나 관리자 등이 교육 대상자에 대해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교육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9	강제 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10	게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나 요금 등의 정보를 영업소, 사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는 행위
11	보존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와 장부를 비치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12	통지 특정 사실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통보,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지·공시할 의무를 위반
13	인력 배치 업무상 특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인력을 선임, 지정, 배치하지 않는 행위
14	인증 사용이나 판매를 위해 사전에 검정이나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됨
15	검사 안전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시 받아야 하는 검사나 점검을 받지 않는 행위
16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수단에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17	토지 출입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 등 권한 있는 자가 공사, 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토지 출입 시에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18	기타 준수사항 위반, 검직금지 등

참고 2

유사입법례

「동물보호법」

제10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4.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제86조(출입·검사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선원법」

제179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4.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 제출 또는 제2항의 출입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5. 제126조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박 또는 사업장 출입을 거부·기피·방해한 사람, 장부나 서류의 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 또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또는 거짓 진술을 한 사람

제56조의2(보고 및 서류의 제출 요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한 운영 및 임금등을 체불당한 피해 선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기금운영자, 선박소유자 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③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

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35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건설현장·사무소 또는 건설기계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건설기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사망 등 사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제작결함 또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1.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2조(검사·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의 설비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